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 선고 2023가합8278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근재

피고주식회사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조준호, 홍창우

변론 종결2024. 9. 13.

판결 선고2024. 11. 1.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22. 4. 19.

체결된 ㉠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 피고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대출계약, ㉢ 2022. 5. 19. 체결된 ㉠ 망인과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 피고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대출계약(이하 각 ㉠항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합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하고, 각 ㉡항의 대출계약을 합쳐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9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90,513,072원, 원고 B에게 45,256,536원, 원고 C에게 45,256,536원, 원고 D에게 45,256,536원, 원고 E에게 224,472,420원, 원고 F에게 449,244,89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채권자들로서 망인(2022. 6. 24. 사망)의 상속인들인 배우자인 I, 자녀인 J, K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각 화해권고결정(갑 제2, 6호증)을 받았다.

ABCD	서울중앙지방법원2023. 3. 29.자 결정2022가단5225746	1. I는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 A에게 42,857,143원, 원고 B에게 21,428,572원, 원고 C에게 21,428,572원, 원고 D에게 21,428,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부터 2022. 11.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2. J, K은 각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 A에게 28,571,429원, 원고 B에게 14,285,714원, 원고 C에게 14,285,714원, 원고 D에게 14,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부터 2022. 11.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한다.
F	서울남부지방법원2023. 4. 7.자 결정2022가단249637	원고 F에게,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I는 189,000,000원, J, K은 각 126,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나. 원고 E도 망인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위 I등을 상대로 소(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단26711)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 E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4. 5. 29. '원고 E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E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이 2024. 8. 1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망인과 I의 공유(각 1/2 지분)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각 대출계약에 따라 ① 2022. 4. 19.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8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② 2022. 5. 19.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졌다(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2022. 6.경부터 망인에 대한 채권자임을 이유로 I, J, K을 상대로 각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각 가압류결정에 따라 2022. 7. 22.까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A	2022.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22카단479)	100,000,000	
E	2022. 7. 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지원의 가압류결정(2022카단80836)	248,000,000	
F	2022.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22카단202718)	496,331,504	이 사건 아파트 중 I, K의 지분에 한함
B	2022.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22카단480)	50,000,000	
D	2022.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22카단482)	합계50,000,000	
C	2022.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22카단48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채권자들이다. 그런데 망인은 원고들의 채권이 발생한 이후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J, K이 운영하는 피고를 위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9억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러한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의 방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90,513,072원, 원고 B에게 45,256,536원, 원고 C에게 45,256,536원, 원고 D에게 45,256,536원, 원고 E에게 224,472,420원, 원고 F에게 449,244,89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 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2. 4. 19.과 2022. 5. 19.에 설정되었고, 원고들은 2022. 7. 6.부터 2022. 7. 22.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늦어도 2022. 7. 22.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과 관련한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을 초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
- 2)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회사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해행위에 있어 수익자는 중소기업은행이지 피고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 3)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 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이므로 수익자인 중소기업은행과 피고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참조)
- 2)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원고들의 청구는 원고들이 망인에 대한 채권자¹⁾임을 이유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것과 관련하여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관련계약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각 대출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인 망인과 수익자인 중소기업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중소기업은행과 사해행위소송에 있어 관련자(채무자, 수익자, 전득자)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 그리고 원고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 피고적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있는 것이고 수익자나 전득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을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이므로 이러한 이유로도 부적법하다. 결국 피고의 나머지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

재판장판사정현석

판사안성민

판사장용

별지

1) 원고 E의 경우에는 I 등을 상대로 기한 소송의 결과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채권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